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3호

1. 제 명 : 강화군복지재단 기부금품 운영에 관한 규정

2. 제정이유

-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강화군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이 필요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기본원칙 (안 제1조~2조)
- 나.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등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기부문화 홍보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의결 (안 제6조~제7조)
- 마. 위원의 의무 및 해촉 (안 제8조)
- 바. 리스펙트 도우너 모임 운영 (안 제9조)
- 사. 수당(안 제10조)

제7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복지재단 기부금품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0월 19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